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9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서명옥
이현승 · 박충권 · 김성원
고동진 · 나경원 · 김기현
김승수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

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2.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특수활동비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u> ①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1. <u>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u> 2. <u>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u>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
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이하 “특수활동비등”이라 한
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
비등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
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
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
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
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